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

(박은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76
----------	------

발의 연월일 : 2015. 7. 15.

발의자 : 김동규, 김동수, 김재국, 김정택,
김진희, 나정숙, 박영근, 박은경,
손관승, 송바우나, 성준모, 신성철,
유화, 윤석진, 윤태천, 이민근, 이상숙,
전준호, 정승현, 주미희, 홍순목

1. 주 문 : 불임과 같음

2.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 1년 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기간제 교사 유족들이 낸 순직인정 신청서에 대해 인사혁신처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산재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순직심사를 할 수 없다.'며 순직 심사신청서를 사실상 반려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는 매우 소극적인 검토를 이유로 순직 심사의 기회 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있음.
- 하지만 기간제 교사의 신분에 대해, 사법부는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음. 기간제 교사는 또한 공무원증을 발급받고 있으므로 공무원으로 봐야 함.
-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순직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나, '상시 공무'

에 종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정확한 정의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이 없음. 그동안 정규직을 의미한다고 관행적으로 해석해왔음. 관행이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임.

- 또한 기간제 교사와 임기제 공무원은 기간을 정해 임용되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순직 대상자가 될 수 없고 임기제 공무원은 순직 대상자가 될 수 있음. 관행이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제시한 바 있어 이는 순직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난해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간제교사와정규직 교사의 업무에 는 차이가 없다'며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변해 사실상 기간제 교사의 공무원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교원 중에서 정규직 교사 7명은 순직으로 인정받았으나, 학교 현장에서 다른 교사들과 같은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13년 4월 기준으로 전국 4만 4천여 기간제 교사 대부분은 정규직 교사처럼 전일제 근무를 하고 있음. 근무 시간이 동일하고, 교과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및 수학여행 지도 등 업무 또한 동일하며 정규직 교사처럼 담임을 맡기도 하는데, 2014년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54%가 여기에 해당함.
-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은 각각 2학년 3반 및 7반의 담임교사로서 수학여행을 지도하였음. 이처럼 같은 공무원 신분이자 동일한 근무시간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관행적으로 처우를 달리 받는 것은 불합리함.
-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담임교사로서 마지막까지 학생들의 삶을 지키다 돌아가신 선생님들에 대해 기간제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불합리 할 뿐더러 관행적인 법령 해석을 이유로 차별을 겪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로서 정규직 교사들과 똑같이 희생된 분들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한 것임.

- 현실적인 제도적 문제점에 대하여는 국회, 공무원연금공단,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리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에 우리 사회가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과 더불어 정부가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국정운영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법률 개정 등 다방면의 노력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결의안 통보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 교육부, 국회, 각 정당대표, 국가 인권위원회

나. 결의안 : 불임

4·1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건의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가 1년 넘도록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교사는 순직 처리되었으나 기간제 교사는 순직 심사신청서가 반려되는 등 순직 심사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기간제 교사는 엄연히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되는 교원의 신분임에도 산재보험 대상자이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순직심사를 할 수 없다는 관행적인 법령 해석으로 인해 고인의 숭고한 뜻이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기간제 교사의 신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들을 살펴보면

- 2012년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고,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 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결과를 제시한 바 있고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4년 12월 ‘기간제교사와정규직 교사의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차별적인 제도의 시정을 권고한 바 있을 뿐 아니라
- 2015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교육부장관은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이고 또 교사로서의 권한과 자격이 있는데 그 처우에 관해서는 아직 미비한 점이 있다’고 답변하는 등

입법부의 검토결과, 사법부의 판시, 행정부 관계 장관의 견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 매우 긍정적인 답변과 해석, 판결을 통해 기간제 교사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견해들이 바뀌고 있는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산시의회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학생 구조와 보호에 나섰다가 유명을 달리한 기간제 교사가 관행적 해석 때문에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이에 정부가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여 교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차별 없는 합리적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1. 안산시의회는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을 구조하고 보호하다가 희생된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1년 넘도록 순직 심사의 기회 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반려되는 사항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단원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를 순직 인정하여, 교사로서의 사명과 직무를 다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선생님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추모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1. 기간제 교사가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 건의한다.

2015년 7월 16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